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77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문방송사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신문방송사), 02-970-9173

제정 2012. 3. 1. 타규정개정 2015. 6. 5. 개정 2021. 8. 2. 개정 2022. 4. 7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대학 문화의 민주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신문방송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1. 8. 2.)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본사"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신문방송사를 말한다.
- 2. "신문사"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신문사를 말한다.
- 3. "방송국"이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방송국을 말한다.
- 4. "디자인부"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신문방송사디자인부를 말한다.(신설 2021.
- 8. 2.)
- 5. "사장"이란 신문방송사를 대표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.(개정 2021. 8. 2.)
- 6. "주간"이란 본사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(개정 2021. 8. 2.)

제2장 조직

제3조(임원) 사장은 총장이 되고, 주간은 본교의 전임 교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간사) ① 본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주간의 명을 받아 서무, 회계, 광고, 신문 발송, 학생기자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구성) 본사는 신문방송사 소속 학생 기자, 학생 방송국원 및 학생 디자인 부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1. 8. 2.)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설치) 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회를 둔다.(개정 2021. 8. 2.)

제7조(기능)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신문발행과 방송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(개정 2021. 8. 2.)
- 2. 신문방송사 예산 편성과 집행(개정 2021. 8. 2.)
- 3. 창작상, 방송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한 계획과 심의(개정 2021. 8. 2.)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간이 되며, 위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한다)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제9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21. 8. 2.)

- 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.(개정 2021. 8. 2.)
- ③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(신설 2021. 8. 2.)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신설 2021, 8, 2.)

제4장 재정 및 상벌

제11조(재정) ① 본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야 한다.

② 본사 사업의 수익금은 대학회계에 세입시켜야 한다.(개정 2015. 6. 5.)
제12조(처우) 주간의 추천으로 신문방송사 소속 학생 기자, 학생 방송국원 및 학생 디자인부원으로 활동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21. 8. 2.)
제13조(징계) 주간은 본교의 학칙이나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수행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학생기자와 학생국원을 해임할 수 있다.(개정 2021. 8. 2.)

제5장 신문사 운영

제14조(제호)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제호는 [서울과기대신문] (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imes)이라 하고, 영자신문의 제호는 [The SeoulTech]라 한다.(개정 2022. 4. 7.)

제15조(사업) 신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신문 발행
- 2. 학교 홍보자료 제작(개정 2021. 8. 2.)
- 3. 신문사 소속 기자의 교육(신설 2021. 8. 2.)

- 4. 서울과학기술대학교창작상 공모, 심사, 시상, 홍보(개정 2021. 8. 2.)
- 5. 그 밖에 신문사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(개 정 2021. 8. 2.)
- 제16조(판권) 신문의 판권은 발행인에게 있으며 신문의 발행, 편집 및 인쇄의 책임을 진다.
- 제17조(학생기자) ① 신문사의 학생기자는 편집장, 부장, 차장, 정기자, 수습기자로 구성한다.
- ② 편집장, 각 부서 부장, 차장은 업무 수행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, 주간이 임명한다.
- ③ 정기자는 수습기간을 거쳐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주간이 임명한다.
- ④ 수습기자는 매 학기 초 또는 필요한 시기에 공개전형으로 선발하고 주간이 임명하다.
- ⑤ 학생기자의 임무는 주간이 신문사 내규에 따로 정한다.

제6장 방송국 운영

제18조(호출부호) 방송국의 호출부호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방송국 S.T.B.S. (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roadcasting System)라 한다.

제19조(사업)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교내방송(정규방송, 임시방송, 특별방송 등)(개정 2021. 8. 2.)
- 2. 방송국 소속 국원의 교육(개정 2021. 8. 2.)
- 3. 방송제 등(개정 2021. 8. 2.)
- 4. 그 밖에 방송국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(개

정 2021. 8. 2.)

제20조(학생국원) ① 방송국의 학생국원은 실무국장, 부장, 차장, 정국원, 수습국 워으로 구성한다.

- ② 실무국장, 부장, 차장은 업무 수행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 하여 주간이 임명한다.
- ③ 정국원은 정해진 수습기간을 거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여 주간이 임명한다.
- ④ 수습국원은 매 학기 초 또는 필요한 시기에 공개전형으로 선발하고 주간이 임명한다.
- ⑤ 학생국원의 임무는 주간이 방송국 내규에 따로 정한다.

제7장 디자인부 운영

제21조(사업) 디자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신설 2021. 8. 2.)

- 1. 신문사 사업 내 디자인 업무 수행
- 2. 방송국 사업 내 디자인 업무 수행
- 3. 그 밖에 디자인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2조(학생부원) ① 디자인부의 학생부원은 부장, 차장, 정부원, 수습부원으로 구성한다.(신설 2021. 8. 2.)
- ② 부장, 차장은 업무 수행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주간 이 임명한다.
- ③ 정부원은 정해진 수습기간을 거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 여 주간이 임명한다.
- ④ 수습부원은 매 학기 초 또는 필요한 시기에 공개전형으로 선발하고 주간이 임명한다.

⑤ 학생부원의 임무는 주간이 디자인부 내규에 따로 정한다.

제23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간의 발의에 따라 사장이 정한다.(개정 2021. 8. 2.)

부칙(제53호, 2012. 3. 1)

부칙(제283호, 2015. 6. 5.)

(대학회계 신설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등 일부개정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25호, 2021. 8. 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77호, 2022. 4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